

신용평가 관련 F&Q

순서

1. 신용평가 일반 1
2. 신용평가 신청 개요 4
3. 신용평가신청서 등 작성방법 6
4. 신용평가 신청 및 재무자료 제출관련 8



1. 신용평가 일반

1 조합 신용등급이 타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 신용등급은 평가목적 및 평가기관에 따라 신용등급 체계와 평가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조합 신용등급과 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간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습니다.
- 우리 조합은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한도 등을 차등 부여하므로 국토교통부의 공제조합 감독기준 조합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운영(장·단기 부도예측 중시)하고 있으며, 평가시 회사의 차입금 등 부채규모, 현금 유동성 등 채무상환능력에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는 반면,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등은 상대적으로 매출액 증가율을 포함한 성장성 및 수익성 등 상거래 이행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므로 조합보다 관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통상 공공입찰용 신용등급은 조합 신용등급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회사채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은 공공입찰용 및 조합 신용등급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2 신용평가모형 변경에 따라 조합원의 재무상태 변경없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나요?

- 신용평가는 차주(조합원)의 부도가능성(부도확률)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각종 업무거래 (보증한도 및 수수료율 결정 등)에 활용함으로써 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조합원의 부도확률에 따른 적정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매년 신용평가모형의 부도변별력 및 안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기업 및 경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기존 모형의 변별력이 떨어지게 될 경우 모형의 변경(약 4 ~ 5년 주기)도 필요합니다.
- 모형 변경 과정에서 대내외 경기변화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 기준값 변경에 따라 일부 조합원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모형 개선 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등급변동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전년도 대비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등급이 동일한 이유는?

- 조합 신용평가방법은 해외 및 국내 선진금융기관에서 이미 구축하여 그 통계적 유의성 및 신뢰성이 검증된 선진평가기법이 적용된 방법입니다.
- 평가기준은 유동성, 재무안정성, 수익성 등의 재무항목과 시공능력, 여신금액 등 기업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항목 및 대표자신용도가 결합되어 있는 바, 단순히 매출증가만을 이유로 등급이 상향되지 않으며, 재무구조 및 유동성 개선 여부, 채산성 및 수익성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질적인 채무상환능력의 변동이 있는지를 최종 평가합니다.

4 정기평가 등급이 만족스럽지 않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 신용등급의 안정성을 위해 재평가는 우리조합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진행되므로 임의적으로 재평가를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현재 외감법인 중 결산일 이후 외부감사인에 의해 분·반기 검토를 받고 전자공시된 조합원에 한하여 유의적인 변동(재무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재평가 대상이 됩니다.
- 이는 분·반기 공시 의무대상인 일부 상장사를 제외하고는 결산일 이후 시점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어렵고, 비외감 조합원의 경우 국세청 신고 자료가 아닌 재무제표를 평가에 반영할 경우 평가자료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5

조합 신용등급을 대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 우리조합 신용평가는 조합과의 업무거래(보증한도 및 수수료 결정 등)를 위하여 조합 내부적으로만 활용되는 것일 뿐, 조달청 등 공공입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다만, 민간공사 입찰참가시 발주자가 조합 신용등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신용등급확인원’을 조합 인터넷창구[제증명발급-신용등급확인원] 또는 영업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주자가 조합에 직접 요청시에는 조합 내부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신용등급 제공 불가)
- 아울러, 우리조합 신용평가에 사용하는 평가모형은 신용평가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마련된 건설업 특성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으로써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고 기업신용도(신용위험)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신용평가 결과통지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 카카오톡(또는 문자)통지 방법

인터넷 창구를 통해 신용평가 신청시 [신용평가신청-결과통지-통지방법]에서 카카오톡 또는 문자통지 선택 및 수신자를 선택 완료할 경우 신용평가 결과가 카카오톡(또는 문자)으로 통지됩니다. 카카오톡(또는 문자) 통지는 서면통지에 비해 평균 3영업일 이상 빠르게 평가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평가 신청 후 담당직원 변경 등 수신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영업점에 즉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통지 방법

인터넷 창구를 통해 신용평가 신청시 [신용평가신청-결과통지-통지방법]에서 서면통지를 선택하시거나, 신용평가 신청서를 서면으로 영업점에 제출한 경우 신용평가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2. 신용평가 신청 개요

1 신용평가의 대상과 신청시기,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우리조합 신용평가의 대상은 조합과 업무거래를 하고자 하는 조합원으로 신용평가 신청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이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신용평가 신청은 가능합니다.
- 다만, 신용평가가 접수순서에 따라 진행되고 평가에 일정기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을 하여야 기존 등급의 유효기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6. 6. 30.) 경과 전에 평가가 이루어져 조합과의 업무거래에 불편이 발생되지 않으니 기간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일이 12월 31일이 아닌 조합원의 신청시기는 제공 리플렛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신용평가신청서, 조합원실태현황,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기타 평가서류가 있습니다.

2 신용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신용평가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신용평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등급(D등급)으로 조합과 업무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조합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위한 출자좌수 및 보증·용자의 이용한도(수수료)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3 | 작년에 회사를 설립했는데 신용평가가 가능한가요?

- 조합의 신용평가를 위해서는 최소 2개연도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설립하여 1개연도 재무제표만 있는 경우 금년도 신용평가는 불가능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용평가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4 |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되는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보증수수료 및 보증한도
- 융자금이자율 및 1좌당 융자한도
- 보증서 발급시 제출서류
- 업무거래정지 범위 등

5 | 신용평가 신청시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 신용평가지 수수료는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세무대리인이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무제표 전송시에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재무제표 전송 과정에서 휴대폰번호 및 수수료금액을 입력하는 부분이 있으나 임의로 기재하시고, 문자가 수신되어도 결제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신용평가신청서 등 작성방법

1 신용평가 신청서의 경리회계담당자 및 결산(세무)대리인은 누구를 기재 하나요?

- 경리회계담당자는 회사(조합원) 담당 직원을, 결산(세무)대리인은 세무사 사무실 등의 담당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2 건설업종 보유현황은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합공사업(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과 전문공사업(철근·콘크리트, 실내건축공사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신규 등록된 건설업종은 관련 등록증(신고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기존의 관계회사를 삭제하려는데 계속 오류가 나는 이유는요?

- 기존의 관계회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영업점에 연락하시고 관계회사가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다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이 참고가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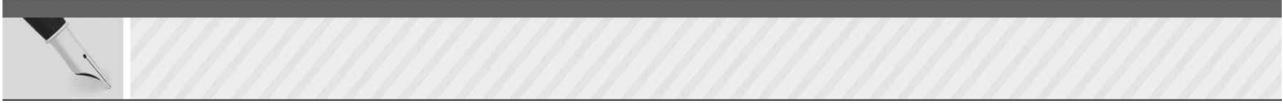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발행을 위해 받은 신용평가는 참고 사항이 되나, 기타 조달청 등 공공입찰용 등의 목적으로 받은 신용평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5

매출처별 매출액 명세에 발주처별 내용을 전부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 발주처별로 간략한 공사명과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사내역이 많을 경우 별도로 작성하신 내역(ex. 매출액 명세서를 대신할 수 있는 계정별 원장 등)이나 거래처별 공사건별 매출액이 확인 가능한 자료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4. 신용평가 신청 및 재무자료 제출관련

1 신용평가 신청시 인터넷으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나요?

- 우리조합 홈페이지(인터넷창구)를 이용한 신청과 영업점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제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신용평가 신청 완료 후 수정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터넷을 통해 신용평가를 신청하고 신청완료를 누른 후, 수정을 하고자할 때에는 먼저 신청완료화면 하단의 신청취소를 누르신 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영업점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관할 영업점에 연락하셔서 접수 취소를 요청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법인세신고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법인세신고자료는 신용평가 필요 서류가 아니므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4 비외감법인의 경우 재무제표만 전송하면 조합에 추가적인 제출서류는 없는건가요?

- 온라인으로 재무제표를 전송하셨더라도 부속명세서 등은 우리조합 홈페이지 인터넷창구를 통해 제출(첨부파일 업로드)하거나, 서면으로 신청시 관할 영업점에 신용평가신청서와 부속명세서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셔야 합니다.

5 재무제표 온라인 전송 후, 조합 수신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조합 원클릭시스템으로 재무제표 전송시에는 원클릭시스템 로그인후 우측 <제출내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더존스마트A)로 전송시 www.dataline.co.kr 회원가입 후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재무제표를 전송한 후 재무제표전송 여부 확인까지 약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간혹 제출기관을 잘못 선택하셔서 전송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오니 제출기관을 반드시 '건설공제조합'으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6 재무제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온라인 전송 방법

원클릭시스템을 통해 조합원사와 세무대리인 모두 재무제표 온라인 전송이 가능하며, 회계프로그램(더존 스마트A)을 이용하여 전송하고자 할 경우 세무대리인만 전송 가능합니다.

□ 직접제출(서면) 방법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원본을 관할 영업점으로 직접 제출(우편 또는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무조정 및 기장을 직접하시는 조합원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 책자를 관할 영업점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7 더존 스마트A로 전송하려는데 건설공제조합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 기관코드 '403'으로 조회하시면 '건설공제조합'이 조회됩니다. (NICE평가정보가 아님에 주의)



8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 신용평가는 결산재무제표의 전산입력 과정이 필수적이고 평가지표의 정확한 산출을 위하여 계정별 명세에 따라 세부적인 분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자본 25억 미만 비외감법인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필수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평가단계에서 필요할 경우 별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
- 서식 작성이 곤란할 경우 「결산보고서」 또는 「세무조정계산서」 책자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9

작년에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 작년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신용평가용)[이하 '신용평가용 동의서'] 제출 후, 대표이사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신용평가용 동의서는 비외감법인에 한하여 제출하며, 온라인 제출과 서면 제출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제출은 우리조합 홈페이지 [인터넷창구-마이페이지-개인정보동의(대표자, 신용도판단용)] 메뉴에서 신용도판단용 동의서를 대표자명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서면 제출은 우리조합 홈페이지 [고객센터-서식/약관-서식-개인정보동의서]에서 신용도판단용 동의서 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